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09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 김 건 · 진종오 · 이성권

박상웅 • 인요한 • 안철수

박충권 · 장동혁 · 이인선

김기웅 · 윤상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여, 공공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규정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도

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외교·통상정책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	에 대한 지원) ①		
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u>경우</u>	<u>경우</u>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외교		
	•통상정책을 반영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		
	<u>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u>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		
	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		
	<u>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u>제2항</u> 에 따른 지	<u>④</u> <u>제3항</u>		
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